

2024년도 제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1. 22.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최태경,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00건(안건번호 제2024-258호~65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258호~294호(순번 1번~37번)는 웹하드에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95호~305호(순번 37번~48번)는 블로그와 카페에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306호~308호(순번 49번~51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가결함.

그 외 안건번호 제2024-309호~657호(순번 52번~400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7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4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 주시기 바람.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비식별 처리된 부분 관련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이숙형 부장: 제2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제2호 안전 비공개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고, 제2호 안전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8쪽~11쪽은 저작권보호심의 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4-4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2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630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검토보고서 상의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심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7

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 총 37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37번, 만화출판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7번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8번~48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블로그와 카페에서 '♀♀♀♀♀♀' 등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 총 19건임.

순번 38번~48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8번~48번, 블로그와 카페에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전송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8번~48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9번~5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3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49번~51번, 출판물의 스캔본을 판매중인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9번~51번을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2번~40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571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4번은 영화 '플라워 킬링 문'으로, 2023. 10. 19. 극장 개봉하여 현재 OTT에서 유료로 서비스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중인 사안임.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5번은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임. 2023. 11. 27.부터 방영된 드라마로, 모니터링 당시 최신 회차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사안임.
(만화 '약사의 혼잣말'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95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 '약사의 혼잣말'로, 2020. 7.부터 현재 연재중

인 만화의 전체 분량인 11권 이상을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52번부터 400번까지 총 571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화, 드라마, 음악, 만화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각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2번~40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58호~657호(순번 1번~400번)에 대해 불법복

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5.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홍승기

위원 최태경